

방 송 통 신 위 원 회

의결 제2008-37-160호

사 건 명 (주)씨앤앰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
조치에 관한 건

사건번호 200809개정009

피 심 인 (주)씨앤앰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8-26 제일빌딩
대표이사

주 문

1.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
가. 금 액 : 30,000,000원
나. 납부기한 :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
2. 피심인은 일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
수집, 제공, 위탁 등 항목별 개별 동의를 얻도록 변경하여 개인정보
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, 개인정보에
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과
개인정보처리내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□시행하며, 개인정보 처리

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보완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. 이때, 구체적인 이행방안,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피심인 현황

나. 업무 절차 및 이용약관 규정 등

2. 행위사실

가.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

피심인이 2006. 1. 1. ~ 2008. 7. 31. 기간동안 초고속인터넷 등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□이용□활용 및 취급위탁하면서 이용자 고지 및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

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이 2006. 1. 1. ~ 2007. 7. 26. 기간동안 (주)○○○넷 등 5개사에 개인정보 118,979건을 취급 위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나.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

피심인이 2007. 7. 27. ~ 2008. 7. 31. 기간동안 개인정보를 수집□이용□활용 및 취급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동의 및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

이용자 동의 없이 2008. 4. 1. ~ 2008. 4. 10. 기간동안 (주)○○○네트워킹에 개인정보 862건을 취급 위탁하여 부가서비스 유치를 위한 TM을 실시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.

다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

피심인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일형태로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

위탁업체간 고객정보 조회권한을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다른 위탁업체가 모집한 고객정보의 조회 및 파일형태 출력이 가능하도록 운영함을 확인하였다.

3. 위법성 판단

가.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

피심인이 2006. 1. 1.~2007. 7. 26. 기간 중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청구서 발송업체 등 5개 위탁업체에 제공한 행위는

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('07. 1. 26일 법률 8289호로 개정前, 이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은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한다)제25조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.

※ 舊 정보통신망법 제25조(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)

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□취급□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※ 舊 정보통신망법 제55조(자료제출 등) ①~③ (생략)

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~⑦ (생략)

※ 舊 정보통신망법 제67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6. 제25조제1항(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

③~⑥ (생략)

나.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

피심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인터넷부가서비스 유치 TM을 실시하도록 한 행위는

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

※ 정보통신망법 제25조(개인정보의 취급위탁)

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(이하 "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"이라 한다)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(이하 "취급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(이하 "개인정보취급위탁"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7.1.26>

1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

2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

②~⑤ (생략)

※ 정보통신망법 제64조(자료제출 등) ①~③ (생략)

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~⑦ (생략)

※ 정보통신망법 제76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6. 제25조제1항(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

6의2. 제25조제2항(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

③~⑥ (생략)

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.

※ 정보통신망법 제24조(개인정보의 이용 제한)
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 정보통신망법 제64조(자료제출 등) ①~③ (생략)

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~⑦ (생략)

※ 정보통신망법 제71조(벌칙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4조□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

2. ~ 6. (생략)

또한, 동 행위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및 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를 위반한 것인 바,

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“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”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

가입자 대비 위반비율이 0.4%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[별표 1]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(3개월 이하)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.

※ 피심인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(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

1. ~ 5. 생략

6.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당해 이용고객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채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※ 피심인의 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(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)

1. ~ 5. 생략

6.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당해 이용고객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,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채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※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(허가의 취소 등)

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4. 생략

5.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

6. 생략

※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[별표 1]

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(제25조제1항 관련)

5.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: 사업정지 3개월

다.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관련

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파일형태로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

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.

※ 정보통신망법 제28조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

-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
※ 정보통신망법 제64조(자료제출 등) ①~③ (생략)
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- ⑤~⑦ (생략)

※ 정보통신망법 제76조(과태료)

- ① (생략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8의2.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4. 시정조치

가.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이 이용자에 대한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행위,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

정보통신망법 제25조, 제28조 및 제76조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별로 각 1,000만원, 합계 3,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정보통신망법 제76조(과태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1 ~ 5. (생략)

6. 제25조제1항(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

8의2.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□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
10. 제30조제3항·제4항 및 제6항(제30조제7항·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

나.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

아울러,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.

- ①개인정보의 수집·제공·위탁 시 항목별로 개별동의를 얻도록 하여 개인정보 활용 여부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개선
- ②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과 개인정보 처리 내역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□시행
- ③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상 개인정보 보호 기능 보완

이때, 구체적인 이행방안,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5.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

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

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, 제20조제1항에 의거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6. 결 론

상기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.

2008. 11. 14.

방 송 통 신 위 원 회	위 원 장	최 시 중 (인)
	부위원장	송 도 균 (인)
	위 원	이 경 자 (인)
	위 원	이 병 기 (인)
	위 원	형 태 근 (인)